



제3보험의 이해 3: 간병보험

오병국 연구원

■ 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으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¹⁾를 보장하는 보험임.

- 간병보험의 대상이 되는 간병상태는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간병 상태를 일컫음.
- 간병보험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상해,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태, 즉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(식물인간, 치매 등)이 되어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에 이를 경우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임.

■ 간병보험은 크게 운영의 주체에 따라 공적 장기간병보험과 민영 장기간병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.

-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.
 -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고령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간병·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임.
 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)을 겪고 있는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.
 - 요양급여제공을 위해 심신의 기능 상태²⁾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하며, 해당 등급에 따라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.
- 민영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정액보상형과 실손보상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.
 - 민영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장기간병보험은 정액보상형이며, 2003년 8월부터 판매되었음.
 - 상품구조에 따라 연금형, 종신보장형, 정기보장형 등이 있음.

1) 간병상태는 일시적으로 간병을 요하는 경우와 장기간의 간병을 요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음.

2) 신체기능, 인지기능 등에 대한 5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됨.

■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조건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.

- 가입 가능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임.
- 보험기간은 대부분이 종신 혹은 일부 80세 만기형임.
- 수발필요상태(180일 혹은 90일)의 정의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
-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수령이 종료되면 보험계약은 소멸됨.
- 간병보험은 암보험과 유사하게 ‘일상생활장해상태³⁾’로 인한 보장개시일은 90일, ‘중증치매상태’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2년으로 면책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.
-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음.
 - 위험률변동(non-guarantee)제도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실제 위험 발생률이 다를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임.
 - 이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.

3) 일상생활장해상태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여,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(휠체어, 목발, 의수, 의족 등)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.